

장기요양급여 입소이용계약에 관한 사항

2025년

카네이션요양원

## 1.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

### 1) 입소 대상자

- (1) 본원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은 노인복지법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다. (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 등급판정위원회에서 1~5등급시설 입소자로 인정 받은 자)
- (2)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(치매, 뇌혈관성 질환, 파킨슨병 및 관련 질환)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장기요양이 필요한 자
- (3)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인정 받은 자
- (4) 건강진단 결과 입소 적격으로 판정되고 공동생활이 가능한 노인 (간염, 결핵 등 전염성 질환자는 입소할 수 없음)
- (5) 코로나 19 입소 전일에 검사 결과 음성 판정 후 검사결과지 지참 후 입소 가능한 자(한시적)

### 2) 입소 정원

본원의 입소 정원은 9명으로 한다. 단 10일 이상의 장기 외박자가 있을 경우, 외박자를 대신해서 1명을 특례로 입소시킨다.

### 3) 모집방법

- (1) 본원의 입주는 어르신 본인이나 가족(대리인)이 입주 신청을 하고 본원과 계약을 통해 입주한다.
- (2)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수급권자 및 저소득층 등 요보호 대상자는 복지시설기관장 및 동 주민센터, 보건소, 지역주민 등의 의뢰를 받아 모집한다.
- (3) 본원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시설의 홍보를 하며 이용 어르신이나 가족에게 입주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.

## 2.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

### 1) 계약 기간

- ① 계약기간은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로 한다.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까지로 한다. 본 기관과 계약의 서류는 5년 동안 보존기로 한다.
- ② 1항의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.
- ③ '을'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'갑'(또는 '병')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,

‘갑’(또는 ‘병’)은 이후 15일 이내에 ‘을’에게 회신 하여야 한다.

- ④ 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‘갑’(또는 ‘병’)으로부터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 계약은 1년간 자동연장 된다. (단, 시설 정원이나 갑의 장기요양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.)
- ⑤ 계약내용 변경사항(장기요양 인정등급, 장기요양 급여비용, 비급여비용 등) 발생 시 이를 즉시 반영한다.
- ⑥ ‘갑’(또는 ‘병’)이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.

## 2) 계약의 목적

노인 복지법,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에 의거 중풍, 치매 등 질환 노인에게 급식요양,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준수 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

## 3) 입소보증금

입소 보증금은 받지 않는다.

## 2) 입소 ·기타 이용료 납부

(1)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20/100과 더불어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금으로 한다. 단, 동법 제40조 3항에 의거 본인 부담금의 일부를 감경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경 절차 및 감경 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경 처리 한다.

- ① ‘갑’의 입소당월 이용료는 당월 05일 기간에 납부하기로 한다. 입소당월 이후 매월 이용료는 매월 05일 납부하기로 한다.(당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로 한다)
- ② ‘갑’ (또는 ‘병’)은 본인일부부담금과 비급여항목에 대한 비용을 전액 지불하여야한다.
- ③ ‘갑’의 이용료 납부방법은 농협/351-0865-2302-63\_/카네이션요양원 이영주또는 카드 납부. 부득이한 경우 현금 납부도 가능하다.(현금영수증처리)
- ④ ‘갑’ 또는 ‘병’의 요구에 의한 개별적인 물품·용역의 구입과 개별적인 희망에 의해 외부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·서비스에 따른 실비는 ‘갑’ 또는 ‘병’이 별도 부담한다.

◇ 시설급여 (1일)

| 구 분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등급    | 2등급    | 3-5등급 |
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|
| 요양급여 | 노인요양시설(구 노인복지법)      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|       |
|      | 노인요양시설(단기보호에서 전환)    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|       |
|      | 노인전문요양시설(구 노인복지법)<br>노인요양시설(개정법) |        |        |       |
|      |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                     | 72,480 | 67,250 | 62,00 |
| 비급여  | 상급침실 이용료                         | 없음     |        |       |
|      | 식재료비(1식)                         | 3,500  |        |       |
|      | 간식비(1회)                          | 1,000  |        |       |
|      | 이/미용료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없음     |        |       |

※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(위원장 : 보건복지부 차관)가 결정, 고시하는 『장기요양급여 비용 등에 관한 고시』(보건복지부 고시)에 따름

< (안내) 수급자 자격별 본인일부부담 비율 >

| 구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시설급여 | 재가급여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|
| 일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0%  | 15%  |
| 기초수급권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0%   | 0%   |
| 기타 의료수급권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|
|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<br>자격전환자 (허위신청, 만성질환자)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2%  | 9%   |
| 저소득층 (본인일부부담금 감<br>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<br>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<br>자) | 8%   | 6%   |

※ [근거규정] 노인장기요양보험법

제40조(본인일부부담금) ①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수급자가 부담한다. 다만, 수급자 중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권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재가급여 :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
2. 시설급여 :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

◇ 세부내역(30일 기준) 3등~5등급

| 구 분          |             | 금액(원) | 내 역      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|
| 총 계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| 2,298,360 |
| 요양보험<br>부담비용 | 소 계         |       | 1,581,360 |
|              | 요양급여비용(80%) |       | 1,488,000 |
| 개인<br>부담비용   | 소 계         |       | 717,000   |
|              | 요양급여비용(20%) |       | 372,000   |
|              | 식사재료비/간식비   |       | 345,000   |
|              | 상급침실 이용료    |       | x         |
|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|

< (안내) 비급여 대상 항목 및 기타 실비 수납기준 >

1. 비급여 항목 세부기준

1) 기본원칙

- 비급여 항목은 식사재료비,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, 이.미용비이며, 그 밖의 비용은 기관에서 임의로 수납할 수 없음
- 해당 비용은 원칙적으로 해당 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실제 소요비용(실비)만을 산정해야 하며, 별도의 이윤부가 불가

2) 세부기준

(1) 식사재료비 : 경관영양 유동식, 간식도 식재료비의 일종임

(2) 상급침실 이용료

- 1인실 또는 2인실 사용하는 경우 일반실에 비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수납
- 상급침실은 (a) 반드시 고정된 벽으로 다른 공간과 구분되어 있고(파티션, 커튼 등은 불가), (b) 독립된 출입문을 갖추며, (c) 노인복지법 시설.설비기준에 의거한 1인당 면적기준(개정법 6.6㎡)을 충족하여야 함

(3) 이.미용비 : 수급자 희망에 의해 이.미용사 초빙하여 서비스 받는 경우 비급여 가능, 단 시설종사자.자원봉사자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비급여 항목으로 수납 불가, 손.발톱 정리 등의 명목으로 별도 수납은 불가

2. 비급여 항목 외 실비 수납기준 : 수급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시설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실비를 수납할 수 있으며, 기관은 실비 이외에 추가비용을 수납하지 못함

#### 5) 신원 인수인의 권리 · 의무

‘갑’과 ‘을’ 그리고 ‘병’은 다음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.

##### ① ‘갑’의 의무

1. 월 이용료 납부
2.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에 협조
3. 시설 내에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
4.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
5. 기타 시설생활 규칙 이행

##### ② ‘을’의 의무

1. ‘갑’의 건강관리 협조
2. ‘갑’의 신변이상을 ‘병’에게 즉시 연락
3. 식사제공 및 생활상담, 조언 및 생활편익 제공
4.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
5. 기타 ‘갑’의 안락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협조

##### ③ ‘병’의 의무

1. ‘갑’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
2. ‘갑’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
3. 인적 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
4. ‘갑’의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‘을’에게 통보
5. 기타 시설생활 규칙이행

#### 4) 계약해지 요건

##### ① ‘갑’의 해지

1. ‘갑’과 ‘병’은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퇴소를 결정할 수 있으며, 제2조 제6항에 의거하여 이에 대한 사항을 ‘을’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.

##### ② ‘을’의 해지

1. ‘갑’의 건강진단 결과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」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
2. 타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
3. ‘갑’의 이용료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(단, ‘을’은 ‘갑’에게 서면으로 이용료 납부를 최고하고 ‘갑’ 또는 ‘병’이 최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)

## 5) 퇴소

- ① '을'은 제5조②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 시 이에 대한 증빙서류와 함께 계약해지 의사를 '갑'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
- ② '갑'과 '병'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, 본원 소정의 퇴소신청서를 작성하여 '을'에게 제출하고 '을'의 보관물품을 인수하여 퇴소하여야 한다. 단, 사유물품을 1년 이내에 인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'병'(또는 '갑')에게 통보 후 '을'이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, 이에 대해 '갑' 또는 '병'은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.
- ③ '을'은 '갑'이 퇴소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'갑'이 지정한(또는 '병')계좌로 지체 없이 지급한다

## 6) 입소물품

'갑'은 시설입소 시 개인물품을 '을'과 협의하여 반입할 수 있다.

## 7) 면회 및 외출·외박

- ① '갑'의 면회시간은 매일 09:00시부터 18:00까지로 한다  
(단 '갑' 과 '을' 또는 '병'이 동의할 경우 변경 할 수 있다).
- ② '갑'은 외출·외박시 사전에 '을'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
- ③ '을'이 제공하는 음식물 이외의 음식물을 '갑'이나 '병'이 반입하고자 할 때에는 '을'과 협의 후에 반입하여야 한다.
- ④ 외출·외박 중 '갑'에게 신체적·정신적 변화 등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 '갑' 또는 '병'은 '을'에게 즉시 사실을 알려야 한다.

## 8) 시설관리

- ① '을'은 보건, 위생, 방범, 방화 기타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시설 직원이 거실을 출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- ② '을'은 원무 행정상 필요한 경우 입소자의 거실을 재배치 할 수 있다.

## 9) 건강관리

- ① '을'은 '갑'의 건강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'갑'과 종사자들에게 연 1회 이상 건강 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.
- ② '갑'이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.
- ③ 의사의 진료결과 입원이 필요한 질병이나 월 1회 이상 장기간 진료가 요구되는 경우 진료비와 부가서비스 경비(교통비, 외부간병인 등)는 '갑' 또는 '병'에게 별도 징수한다.
- ④ '을'은 입소시 갑의 건강상태 등을 확인하고 기록함은 물론, 갑에 대한 적절한 건강관

리를 하여야 하며, 갑의 건강유지, 악화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

- ⑤ '을'은 갑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활력증상 확인, 투약관리, 욕창관리, 낙상방지 등 건강관리 활동을 하여야 한다.
- ⑥ '을'은 '갑'이 의사로부터 월 2회 이상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며, 이상시 지체없이 '병'에게 통보한다.
- ⑦ '을'은 갑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물리치료, 재활치료를 제공해야 한다.

#### 10) 시설물 배상

- ① '갑'은 '을'의 시설물에 대하여 그 본래의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, '갑'에 의한 시설물의 파손 또는 멸실에 대하여는 '갑' 또는 '병'이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.
- ② '갑' 또는 '병'이 원상회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'을'은 시설물의 잔존가치 등을 고려하여 실비로 산출한 비용을 그 내역과 함께 문서로 제시하고 '갑' 또는 '병'은 이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.

#### 11) 위급시 조치

- ① '을'은 '갑'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된 때에는 협약병원, '갑'(또는 '병')이 지정한 병원 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'병'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.
- ② '병'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. 다만 대처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.
- ③ '갑'이 사망하였을 경우에 '을'은 즉시 병원으로 후송하고 '병'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. 단 '병'과 사전에 협약이 있을 경우, '을'이 장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.
- ④ 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가 불가능할 때 '을'은 '갑'의 입소 입소월액 또는 시설의 운영비로 화장에 의한 장례를 집행하고 추후에 '병'과 정산할 수 있다.

#### 12) 임종 및 장례

입주자의 임종 및 장례절차는 가족이나 연고자가 있을 경우와 무연고자를 구별하여 정한다.

##### ① 가족이나 연고자가 있을 경우

- 1. 임종이 임박하였을 시 치료 및 입원은 '병'과 협의하여 결정한다.
- 2. 장례는 '병' 또는 신원인수인의 정함에 따라 가족이 장례절차의 모든 것을 수행하게 한다.

##### ② 무연고자

- 1. 임종이 임박하였을 시 치료 및 입원은 '을'의 책임 하에 결정한다.
- 2. 장례는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행정절차에 의거하여 장례가 수행될 수 있도록 한다.
- 3. 1개월 이내 관할 동(읍, 면)사무소에 사망신고를 한다.

### 13) 식사 및 간식

- ① '을'은 1일 3식 및 간식을 '갑'에게 제공하며, '갑'의 상태에 따라 특별식을 제공할 수 있다. 특별식(경관급식비 등) 비용이 일반 수급자의 식재료비/간식비를 초과하는 부분은 '갑' 또는 '병'이 별도 부담한다.
- ② '을'은 식단표 및 간식제공계획에 대하여 사전에 '갑'에게 제공하고 게시하여야 한다.

### 14) 요양실의 배정

'갑'의 생활실 배정은 입소순서에 따르며, 입소 후 '갑'의 건강상태, 수발조건,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'갑' 또는 '병'의 의견을 반영하여 '을'이 조정할 수 있다.

### 15) 개인정보 보호의무

- ① '을'은 '갑'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.
- ② '을'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'갑'의 개인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.
- ③ '갑'의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에 대한 승낙은 서면(개인정보수집 및 활용 동의서)으로 한다.
- ④ '갑'은 '을'이 수집·관리하는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.
- ⑤ '을'은 '갑'의 사생활을 존중하고,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.

### 16) 기록 및 공개

수급자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, 수급자나 가족이 요구할 경우 표준양식에 의거한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.

### 17) 배상책임

-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'을'은 '갑'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.
  - 1. 시설 종사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'갑'을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
  - 2.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거나 약을 잘못 투약하여 '갑'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
  - 3. 시설장비 또는 시설관리가 부실하여 '갑'을 부상케 하거나,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
  - 4. 학대(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의 노인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를 말한다)로 인하여 '갑'의 건강상태가 악화되거나,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때
-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'갑'은 '을'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.
  - 1. 시설 내에서 자연 사망하였을 때
  - 2. '을'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'갑'이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

3. '갑'이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
4. '갑'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

#### 18) 이용계약서의 해석

- ① 이 계약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이나 사회상규에 따른다.
- ② 본 계약으로 발생하는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 소재지 법원에 제기한다.

### 3. 이용료 등 비용을 변경하는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

#### 1) 이용료 등 비용 변경

-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
-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의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
- ③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
- ④ 물가 변동으로 식자재비 증감 변동 하여야 하는 경우

#### 2)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

- ① 시설장은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때에는 “**시설 운영위원회**”의 사전 승인을 받아 비용을 변경한다.
- ② 시설장은 1개월 전까지 유선 및 문자, 카카오톡, 구두 또는 서면으로 변동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.

### 4.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

입소된 어르신에 대하여 본원은 시설급여(신체활동 지원, 가사 활동 지원, 정서 지원, 기능 평가 및 훈련, 치매 관리지원, 응급지원, 시설환경관리, 간호 처치 등)을 제공하며, 그 외에도 다양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통해 안락하고 편안한 노후를 제공하되 비용 일체를 수급자 또는 보호자(또는 대리인)에게는 부담시키지 않는다.

## 5. 특별 보호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 서비스 기준과 비용에 관한 사항

1) 서비스 기준전 조항 외에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수급자에게는 적절한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한다.

2) 비용에 관한 사항

① 처치비는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.

② 치료 또는 처치하는 과정에서 재료는 비용으로 부담한다.

## 6. 의료를 필요로 할 때는 구체적인 처리 절차

1) 응급조치 사항

(1) 생활 어르신에게 낙상, 질식, 경련, 화상, 화재 등 응급상황이 발생 시 모든 임직원은 본원의 “응급상황 대응 지침서”에 의하여 신속한 대처를 통해 합병증 및 2차 손상 등을 예방한다.

(2) 응급 처치와 동시에 병원에 후송 조치함과 동시에 ☎시설장 (간호조무사) ☎보호자 등에게 신속한 연락을 취한다.

## 7.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

(1) 본원은 시설관리 규칙을 정하고 관리를 하며 입주 어르신은 이를 준수한다.

(2) 본원의 시설물을 사용하면서 입주하신 어르신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나, 본인의 중대한 과실로 파손, 파손 시 수급자 또는 보호자(또는 대리인)와 합의하여 처리한다.

## 8.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 책임, 면책 범위에 관한 사항

1) 서비스 제공 시 제공자의 부주의로 일어난 사고와 본원의 과실로 인한 책임은 본원(카네이션요양원)이 부담한다. (복지시설 배상책임보험 가입 시설)

| 상품명        | 증권번호         | 보험기간                      | 보험사    | 정원        |
|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|
| KB<br>종합보험 | 2023-7810526 | 2023-12-28<br>~2038-12-28 | KB화재보험 | 9명 , 특례적용 |

【첨부1】시설 현황

| 침실 | 사무실 | 요양<br>보호<br>사실 | 자원<br>봉사자실 | 의료 및<br>간호사<br>실 | 물리<br>(작업)<br>치료실 | 프로<br>그램<br>실 | 식당<br>및<br>조리실 | 직원<br>휴게실 | 비상<br>재해<br>대비<br>시설 | 화장실 | 세면장 및<br>목욕실 | 세탁장<br>및<br>세탁물<br>건조장 |
|----|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
| ○  |     |                | ○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○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○         | ○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         | ○                      |